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여 기업의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시해야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작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사업장별 고용형태 공시자료 활용도 및 고용구조 개선 효과는 낮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도 법인 단위 고용형태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공시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 삭제(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별지제2호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u>이 경우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장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형태 현황과 함께 공시해야 한다.</u>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 ----- ----- ----- ----- ----- ----- ----- <u><후단 삭제></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